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0. 5 선고 2022가단5208031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
담당변호사 송명근, 손성락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0. 5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들은 연대하여 123,316,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6. 25.부터 2022. 7. 24.까지는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2022. 8. 7.까지는 연 9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,

나. 피고 C은 144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이태우

별지